서울과학기술대학교 규정 제614호

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

서울과학기술대학교(연구지원과), 02-970-9126

타규정개정 2015. 6. 5.

개정 2017. 3. 2.

개정 2020. 2. 19.

개정 2021. 6. 2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 교원(참여연구자 포함)의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비·산학협력사업비(이하 "연구비"라 한다) 및 간접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〈개정 2010.8.30., 2021.6.2.〉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"관리기관"이란 연구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통합적으로 관리·집행하는 책임 과 의무가 부여된 기관을 말한다.
- 2. "연구비"란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비 지원기관(이하 "지원기관"이라 한다)에서 본교의 교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연구비(용역과제연구비, 교내연구비, 산학협력단에 지원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포함)를 말한다.
- 3. "간접비"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건물, 연구시설, 연구인력 등 대학이 가진

유·무형의 자원을 사용함에 따라 관리기관이 연구비 중에서 일부를 징수 또는 지원기관이 연구비에 부수하여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.

- 제3조(적용범위) 연구비 및 간접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- 제4조(관리기관)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비 및 간접비를 중앙관리한다. 다만, 총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위임할 수 있다.
- 제5조(교내연구비) ① 본교 대학회계, 발전기금, 기타 재원 등으로 교원에게 학술연구 비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5.6.5.>
 - ② 제1항의 학술연구비 지원사업의 종류, 사업내용, 지원기준, 지원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6조(연구장려금 등) ① 본교 대학회계 재원 등으로 교원에게 학술연구 진흥을 위한 장려금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5.6.5.>
 - ② 제1항의 장려금 및 보조금에 대한 종류, 사업내용, 지원기준, 지원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2장 위원회

- 제7조(연구비관리위원회) 연구비 및 간접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비관리위원회를 둔다. 다만, 산학협력단에는 "연구위원회"가, 대학(학부), 연구소, 센터, 사업단은 "운영위원회" 등이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.
- 제8조(연구비감사위원회) ① 연구비의 관리·지출에 관한 회계를 검사하고, 연구비의 합법적 집행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비감사위원회를 둔다.
 - ② 연구비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- 제9조(연구윤리위원회) ① 연구윤리 및 연구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,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.
 -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3장 연구비 중앙관리

- 제10조(관리원칙) 연구비관리는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며,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연구수행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범위 안에서 관리하여야 한다.
- 제11조(연구과제 신청) ① 연구책임자가 지원기관 등에 연구과제를 신청하고자 할 경 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을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연구개발사업, 인력양성사업 등 대응자금이 필요한 연구과제를 신청할 경 우에는 대학(원) 및 행정부서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6.2.>
 - ③ 산학협력단장은 신청된 연구과제를 검토 후 지원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.
- 제12조(연구비 계상) ① 연구계획서에서 연구비를 산정할 때 지원기관의 연구비 비목 별 산정기준에 따르되,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- ② 연구수행 또는 연구여건 조성에 필요한 대응자금을 대학에서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대응자금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13조(간접비 계상) ① 연구비에는 간접비가 반드시 계상되어야 한다.
 - ② 간접비의 계상기준, 징수 및 관리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14조(협약체결 및 통보) ① 연구책임자가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원기관의 장과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 간에 연구협약(계약)을 체결하여야 한다. 다만, 연구과제의 계약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연구책임자가 제출한

- 계약서로 연구계약을 갈음할 수 있다.
- ② 본교 교원이 관리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직접 수령하였으면 그 사실을 산학협력단장에게 즉시 보고하고, 연구비 및 간접비를 산학협력단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
- ③ 산학협력단장은 지원기관과 연구과제 협약을 체결한 후 그 내용을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15조(협약내용 및 연구계획의 변경) 연구 협약내용 및 연구계획의 변경은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르되, 지원기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내역과 변경사유를 명기한 연구계획변경신청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16조(협약의 해지) 협약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협약서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제17조(연구비 계정관리) 연구비의 수입과 지출은 본교 연구비 중앙관리 계정에 편입하고 산학협력단장이 관리한다.
- 제18조(연구비 계약관)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비 회계의 계약관이 된다. 다만, 연구비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임계약관을 둘 수 있다.
- 제19조(연구비 지출관) 산학지원과장은 연구비 회계의 지출관이 된다. 다만, 연구비지출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임지출관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21.6.2.>
- 제20조(실행예산 편성 및 변경) ① 모든 연구과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구협약을 체결할 때에 제출한 연구계획서상의 소요예산을 실행예산으로 본다.
 - ② 연구과제의 연구비 총액이 변경되었거나 연구협약체결 이후에 실행예산 편성 및 변경할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지침에 의하되, 지원기관의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내역과 변경사유를 명기한 실행예산변경신청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

야 하다.

- 제21조(연구비 집행기준) ① 연구비 비목별 집행기준은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르되, 규정이 없는 경우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행예산의 비목별 범위 내에 서 집행하여야 한다.
- ② 연구비 중 직접비성 비목에서 연구책임자에게 500만원 이하에 대하여는 집행 권하을 위임할 수 있다.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22조(연구관리시스템 운영) 연구비 집행은 연구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제23조(연구비 집행) ① 연구비는 해당연구과제의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
- ② 연구비의 집행은 입금액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.
- ③ 연구비는 연구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. 다만, 타당한 사유로 인해 연장이 필요할 경우 연구기간 종료 이전에 산학협력단 및 지원기관의 연장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.
- ④ 연구책임자는 실행예산에 따라 정해진 증빙서류를 갖추어 연구비 지급을 산학 협력단에 요청하여야 한다.
- ⑤ 연구비 집행은 연구비카드(법인카드 포함) 결제와 계좌이체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.
- ⑥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의 청구에 따라 전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⑦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과제의 연구비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최종책임을 진다.
- 제24조(연구기기 등 물품 구입) ① 연구책임자가 연구 수행에 필요한 연구기기 등 물 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에 물품구매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관리기관은 제1항의 구매요구서에 따라 물품을 구매하여 연구책임자에게 제공하다.

- ③ 연구책임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, 가격이 소액인 물품이나 원격지에서 구매하는 물품 또는 연구 수행상 긴급을 요하는 물품은 직접 구입할 수 있다.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즉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연구비 지급을 청 구하여야 한다.
- ④ 그 밖의 물품구매 절차는 물품관리법 등 회계 관계 법령과 본교 대학회계 관련 규정 등을 따른다. <개정 2015.6.5.>
- 제25조 (물품 등의 관리·귀속) ① 연구비(간접비 포함)로 구입한 연구 기자재 등 비품과 도서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구입과 동시에 본교 재산으로 귀속하여야한다.
 - ②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비로 구입된 비품류(집기, 실험기기, 도서류 등)는 연구책임자가 관리한다.
- 제26조(선급금) ①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책임자의 청구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② 선급금은 인건비 및 간접비를 제외한 금액의 연구비 중에서 50% 이내로 지급할 수 있으며, 연구비가 분할 지원될 경우에는 그 금액의 50%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- 제27조(연구보고서 제출) 연구책임자는 연구보고서를 지원기관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 한 내에 산학협력단 및 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28조(연구비 집행잔액 및 이자) ① 연구비의 집행잔액 및 이자는 지원기관의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,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본교의 간접비회계 수입으로 처리한다.
- ② 지원기관이 연구비 통합계좌로 운영되는 연구과제의 이자를 요구할 경우 그 이자는 통합계좌 개설은행의 보통예금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.

제4장 관리기관 및 연구자의 책무와 제재

제29조(연구윤리 준수의무) 관리기관 및 연구자는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30조(관리기관의 책무)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갖는다.

- 1. 지원기관으로부터 선정된 연구과제가 최종연구결과물의 발표 및 제출을 완료할 때까지 연구자가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고 연구비를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·감독하여야 한다.
- 2. 지원기관에서 정한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3. 연구자에 대하여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최대한 편의 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4. 연구자가 지침 또는 협약서에 규정된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관리하여 야 한다.
- 제31조(연구자의 책무)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은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책무를 갖는다.
 - 1. 연구계획서에 의한 성실한 연구수행
 - 2. 연구비의 투명한 집행
 - 3. 기한 내 연구결과 보고의 제출
 - 4. 지원기관의 기준 및 협약 내용 준수
 - 5. 지식재산권(직무발명 등)에 대한 신고 및 기술이전에 대한 성실한 협조
 - 6. 기타 연구수행에 필요한 사항
- 제32조(연구비 감사) ①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비의 적정한 집행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

- 역 매년 1회 이상 연구비 중앙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감사와 외부감사를 실행한다.
- ② 연구비 감사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33조(연구비 부당집행 신고센터 설치) 연구비 부당집행의 신고업무를 처리하기위한 연구비 부당집행 신고센터를 산학협력단에 설치하여 운영한다.
- 제34조(연구비 지급중지 또는 회수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연구자의 연구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, 이미 지급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.
 - 1.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지급중지 또는 회수통보가 있을 때
 - 2. 연구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가 인정 될 때
 - 3. 기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 할 때
- 제35조(연구비 신청의 제한) ① 총장은 연구자가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연구비 지원 제한 등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 - ② 총장은 제34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향후 5년간 연구비 지원 신청을 제한할 수 있으며, 그 이외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정도에 따라 연구비 신청 제한 여부를 정할 수 있다.

제5장 간접비 관리

제36조(간접비 관리·운영) 간접비는 산학협력단에서 관리·운영한다.

- 제37조(간접비 계약관 및 지출관) ① 간접비는 산학협력단장이 계약관이 된다.
 - ② 산학지원과장은 지출관이 된다. <개정 2021.6.2.>
- 제38조(간접비 배분·관리) 징수한 간접비 배분·관리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

다.

- 제39조(간접비의 회계) ① 간접비는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입하여 관리하되 다른 계정 과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한다.
- ② 간접비의 회계연도, 수입과 지출은 「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」을 준용한다.
- 제40조(간접비 사용) ① 간접비는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별표 2에서 정한용 도 및 다음 각 호에 사용할 수 있다. <개정 2021.6.2.>
 - 1. 기자재·연구시설·장치의 구입 및 보수 등 연구인프라 구축 경비
 - 2.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
 - 3. 연구 활동 지원 및 연구 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비
 - 4. 산학협력단 사업 및 운영비
 - 5. 부설연구소 지원
 - 6. 연구자 및 지원인력의 교육비
 - 7.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(참여연구자, 연구지원인력 등 포함)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 <개정 2017.3.2., 2021.6.2.>
 - 8.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시설사용료 및 공공요금 등 대학부담 경비 납부 <개정 2017.3.2.>
 - 9. 연구시설 건축 등을 위한 적립 〈개정 2017.3.2.〉
 - 10. 기타 학술연구지원사업 〈개정 2017.3.2.〉
 - ② 연구소는 간접비에서 지원된 예산은 통장, 장부, 지출증빙에 있어서 타 예산과 구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 - ③ 연구소는 산학협력단장이 간접비 결산내역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각 연구소는 가접비 결산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.
 - ④ 연구소에서 집행하는 간접비의 사용이 부적합하여 불인정 받을 경우에는 불인

- 정 금액을 1개월 이내에 반납하여야 하며,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불인정 금액만큼 차감하고 지원할 수 있다.
- ⑤ 연구책임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연구비 대역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연구비 대역 보증각서를 제출하면 산학협력단장은 이를 검토하여 연구비 총액(간접비 제외)의 50% 이내(연내 정산한 금액은 제외)로 연구비를 대역할 수 있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의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역한 연구비 전액을 연구책임자가 반환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20.2.19.〉
- 제41조(간접비의 집행) ① 간접비는 산학협력단회계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.
 - ② 해당 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다음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- 제42조(연구장려금의 지급) ① 연구활동 및 실적이 우수한 연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② 연구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.
- 제43조(직원의 임용) ① 간접비 재원으로 교직원의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직원을 임용할 수 있다.
 - ② 직원의 임용은 관리기관장이 한다.
 - ③ 직원의 임용·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기관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44조(기타수입) 간접비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기타수입은 간접비회계에 적립하여 사용한다.

제6장 보칙

제45조(재정보증과 변상책임) ① 연구비 및 가접비회계 직원에 대하여 재정보증에 가

입하여야 하며, 보험료는 관리기관(대학, 연구소, 센터 포함)에서 부담한다.

② 연구비 등 회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고의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 역는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변상책임을 진다.

제46조(지식재산권) 연구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 및 기술이전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과학기술대학교 지식재산권에 관한 규정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 <개정 2010.8.30>

제47조(관계서류의 보관) 연구비 및 간접비의 관리 운영에 관한 서류(전산자료 포함) 는 5년간 보관한다.

제48조(보안관리) 연구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이 요구되는 주요 정보자료, 연구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8조에 따라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21.6.2.〉

제49조(지침) 총장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비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관리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.

부 칙<규정 제621호, 2010.05.17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폐지) 「서울산업대학교 간접비 관리규정」은 이를 폐지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<규정 제631호, 2010.08.30.>

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교명변경에 따른 일괄개정)

부 칙<제283호, 2015.6.5.>

(대학회계 신설에 따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육공무원 국외여행규정 등 일부개정규정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제364호, 2017.3.2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제515호, 2020.2.19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제614호, 2021.6.2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① 제40조, 제48조는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,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」및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」제정·시행일인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「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(교육부고시, 2021. 1. 26. 개정)」 부칙 제2021-5호에 따라. 제40조는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할 수 있다.